

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(제15조제 1 항 관련)

1. 표시방법

- 가.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“경고:” 라고 표시하고 적어야 한다.
- 나. 담배갑 앞면·뒷면·옆면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.
- 다. 광고물에 표기하는 경고문구는 담배갑 앞면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와 같은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.

2. 사각형의 크기

- 가.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앞면·뒷면·옆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한다.
- 나.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한다.

(단위: 밀리미터)

광 고 면 적	표 준 규 격	사각형의 크기
B4 초과	364×257 초과	112×25 초과
B4	364×257	112×25
A4	297×210	94×20
B5	257×182	80×17.5
A5	210×148	62×15
A5 미만	210×148 미만	62×15 미만

- 다.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면적에 대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.

3. 색 상

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담배 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.

4. 글자체

고딕체

5. 표시위치

- 가.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앞면·뒷면·옆면 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.
- 나. 잡지·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.